

## 제9장 보 칙

**제55조(교육)** ①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56조(벌칙)**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.

**제57조(규정의 개폐)**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내부정보관리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은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